

New Article 21
withholding tax
calculation guideline ^{P1}

새롭게 개정된 Article 21 원천징수세 계산 지침

새롭게 개정된 Article 21 원천징수세율 규정에 관한 정부 규정('GR') No.GR-58¹이 발표된 이후 재무장관('MoF')은 주로 GR-58 에 도입된 유효 세율(*Tarif Efektif Rata-Rata/TER*)을 적용하기 위해 Article 21 개인이 얻는 근로 소득, 용역 소득, 활동 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세 계산과 관련된 시행 지침을 설명한 No.PMK-168²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동 규정은 2024 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PMK-168 은 PMK-250³, PMK-252⁴, PMK-102⁵, PMK-262⁶와 같은 여러 MoF 규정을 철회합니다. 각 규정의 내용과 변경 사항은 동 PMK 에서 간소화됩니다. 이전 Article 21 원천징수세 시행 지침(PER-16⁷)의 법적 근거가 되는 PMK-252 가 철회됨에 따라 PER-16 도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PMK-168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수령자 유형과 세금 처리

¹ GR No.58 Year 2023 (GR-58) dated 27 December 2023

² MoF Regulation No.168 Year 2023 (PMK-168) dated 29 December 2023

³ MoF Regulation No.250/PMK.03/2008 (PMK-250) dated 31 December 2008 and effective from 1 January 2009 regarding Amount of official costs or pension costs deductible from the gross income of Permanent Employee or Pensioners

⁴ MoF Regulation No.252/PMK.03/2008 (PMK-252) dated 31 December 2008 and effective from 1 January 2009 regarding Technical directives for the withholding of tax on income with respect to work, service and activity of individuals

⁵ MoF Regulation No.102/PMK.010/2016 (PMK-102) dated and effective from 27 June 2016 regarding Stipulation of portion of income in connection with works of employees paid daily and weekly as well as other temporary employees which are not subject to withholding of Income Tax

⁶ MoF Regulation No.262/PMK.03/2010 (PMK-262) dated 31 December 2010 and effective from 1 January 2011 regarding Procedure for withholding of Article 21 Income Tax for State Officials, Civil Servants, Members of Indonesian National Military Forces, Members of Indonesian National Police and their Retirees on income charged to State Revenues and Expenditures Budget or Regional Revenues and Expenditures Budget

⁷ Director General of Taxes Regulation No.PER-16/PJ/2016 (PER-16) dated 29 September 2016

PMK-168 에 따라 적용되는 소득 수령자 유형은 PER-16 에 따른 소득 수령자 유형과 대부분 동일하지만, 계산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PER-16 은 주로 Article 17(1)(a)(‘Art. 17’)에 규정된 개인의 누진 소득세율을 사용하고 연율화를 사용하며 특정 공제와 비과세 금액 제한(*Penghasilan Tidak Kena Pajak/PTKP*)을 적용합니다. 또한 소득의 연속성, 연간 누적 소득, 개인의 세금 등록 번호 상태를 고려하여 특정 유형의 소득 수령자에게 부과되는 Article 21 원천징수세를 계산합니다.

PMK-168 은 세액 계산 시 TER 을 사용하는 등 계산을 간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TER 은 기본적으로 연간 환산 소득에 적용 가능한 Art. 17 누진 세율, 허용 가능한 공제, PTKP 를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유효 세율의 추정치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단일 세율입니다. GR-58 에 규정된 TER 과 적용 가능한 TER 표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TaxFlash 2024 년 제 1 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Article 21 세금 계산은 과세 표준에 적용 가능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PMK-168 에 따른 각 소득 수령자 유형에 적용되는 과세 표준과 세율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소득 수령자 유형	과세 표준	세율
Permanent employees 및 Pensioners	마지막 과세 기간 이전: 한 달 동안 얻은 총소득	월간 TER
	마지막 과세 기간: 연간 총소득 ⁱ - PTKP - 허용 가능한 공제 ⁱⁱ	Art. 17
Non-permanent employees		
비월별 지급 및 일일 지급액이 IDR 2.5 million 이하	일일(또는 일일 평균) 총소득	일일 TER
비월별 지급 및 일일 지급액이 IDR 2.5 million 초과	50% x 일일(또는 일일 평균) 총소득	Art. 17
월별 지급	한 달 동안 얻은 총소득	월간 TER
Pension program participants with employee status	한 달 동안 얻은 총소득	Art. 17
commissioners/supervisory boards with irregular income	한 달 동안 얻은 총소득	월간 TER
Non-employees	50% x 한 달 동안 얻은 총소득 ⁱⁱⁱ	Art. 17
Activity participants	한 달 동안 얻은 총소득	Art. 17
Ex-employees	한 달 동안 얻은 총소득	Art. 17

i. 근로 기간이 만 1 년이 안 되는 외국인의 경우 마지막 과세 기간의 연간 총소득을 연간 기준으로 환산한 후 실제로 일한 개월 수를 기준으로 납부할 세액을 비례 배분합니다.

- ii. 정규직 직원에게 적용되는 허용 가능한 공제는 기능 비용, 퇴직 연금, 고용주를 통해 지급되는 구호금이며 연금 수령자에게 적용되는 허용 가능한 공제는 연금 비용과 연금 지급자를 통해 지급되는 구호금뿐입니다.
- iii. 비케이더링 용역을 받는 비직원은 계약/인보이스에 따라 분리되어 지급될 수 있는 특정 비용을 과세 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PMK-168에는 이전 규정과 마찬가지로 각 소득 수령자 유형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범주화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자주 묻는 질문 가운데 하나는 정규직 직원, 비정규직 직원, 비직원을 어떻게 구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 수령자 범주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범주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 정규직 직원(*pegawai tetap*) – 위원/감독원을 포함하여 특정 경상 소득을 얻거나 버는 직원과 정규 근무를 하는 경우 특정 기간 동안 계약에 따라 일하는 직원입니다.
- 비정규직 직원(*pegawai tidak tetap*) – 프리랜서를 포함하여 작업 일수, 생산 단위 수 또는 고용주의 요청에 따라 완료한 특정 작업을 기준으로 일을 할 때만 소득을 얻는 직원입니다.
- 비직원(*bukan pegawai*) – 소득 제공자의 명령이나 요청에 따라 용역 소득 또는 프리랜서 소득을 얻는 정규직 직원과 비정규직 직원 이외의 개인입니다. 특정 전문가(토지 소유권 등록 담당자 포함), 아티스트(콘텐츠 크리에이터 포함), 보험 설계사 등이 이 유형에 속합니다.

정규직 직원의 실수령액에 미치는 영향

Article 21 월간 원천징수세 부과 대상자의 대다수는 정규직 직원이므로 동 범주에 적용되는 달라진 계산 방법은 마지막 과세 기간 이전에 수행된 계산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 과세 기간에 이루어지는 계산은 이전 규정과 동일하게 Art. 17 개인의 누진 소득세율을 사용하고 허용 가능한 공제와 비과세 금액 제한을 적용합니다. 근로 기간이 만 1년인 소득 수령자의 마지막 과세 기간은 12월이며 근로 기간이 만 1년이 안 되는 소득 수령자의 마지막 과세 기간은 개인이 소득을 얻은 마지막 달입니다.

그러나 TER은 '추정' 세율만을 나타내므로 납부할 세액은 다를 것이며 이전 Art. 17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된 납부할 세액만큼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직원의 실수령액이 달라질 것입니다. 근로 기간이 만 1년이 안 되는 현지 직원 등 경우에 따라서는 마지막 과세 기간 이전에 Article 21 원천 징수된 총 세액이 마지막 과세 기간에 재계산된 실제 납부할 세액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직원의 세액이 과다 원천 징수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PMK-168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고용주가 마지막 과세 기간의 다음 달 말까지 재계산된 세액을 기준으로 과다 원천 징수된 세액을 직원에게 환급분으로 지급하고 원천징수세 납부 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특정 과세 기간에 과다 납부한 세액은 다음 달에 납부할 세액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또한 PMK-168 에 규정된 내용에 따르면 세금 수정 신고 중에 과다 납부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연속된 달이 아니더라도 다음 과세 기간의 세금 신고서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핵심 사항

상기에 설명한 바와 같이, 새로운 계산 방법에 따른 변경 사항으로 인해 마지막 과세 기간 이전 기간에 납부할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과세 기간에 조정되므로 납부할 총 연간 세액은 이전 방법에 따라 계산된 세액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직원의 실수령액 및 현금 유동성과 관련이 있으므로 해당 변경 사항을 직원들에게 조심스럽게 전달해야 합니다.

순보수 패키지를 제공하는 회사의 경우 세액 공제액도 영향을 받으므로 이러한 변경 사항은 회사의 현금 유동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으로 직원 규모가 크고 급여 시스템을 통해 직원의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는 회사는 상기 변경 사항을 수용하기 위해 급여 시스템을 변경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Your PwC Indonesia Contacts:

Abdullah Azis
abdullah.azis@pwc.com

Hasan Chandra
hasan.chandra@pwc.com

Raemon Utama
raemon.utama@pwc.com

Adi Poernomo
adi.poernomo-c@pwc.com

Hendra Lie
hendra.lie@pwc.com

Runi Tusita
runi.tusita@pwc.com

Adi Pratikto
adi.pratikto@pwc.com

Hyang Augustiana
hyang.augustiana@pwc.com

Ryuji Sugawara
ryuji.sugawara@pwc.com

Adrian Hanif
adrian.hanif@pwc.com

Irene Satyanagara
irene.satyanagara@pwc.com

Sujadi Lee
sujadi.lee@pwc.com

Alexander Lukito
alexander.lukito@pwc.com

Kianwei Chong
kianwei.chong@pwc.com

Sukma Alam
sukma.alam-c@pwc.com

Ali Widodo
ali.widodo@pwc.com

Lukman Budiman
lukman.budiman@pwc.com

Surendro Supriyadi
surendro.supriyadi-c@pwc.com

Andrias Hendrik
andrias.hendrik@pwc.com

Made Natawidnyana
made.natawidnyana@pwc.com

Susetiyo Putranto
susetiyo.putranto@pwc.com

Anton Manik
anton.a.manik@pwc.com

Mardianto
mardianto.mardianto-c@pwc.com

Sutrisno Ali
sutrisno.ali-c@pwc.com

Antonius Sanyojaya
antonius.sanyojaya@pwc.com

Margie Margaret
margie.margaret@pwc.com

Suyanti Halim
suyanti.halim@pwc.com

Avinash Rao
a.rao@pwc.com

Marlina Kamal
marlina.kamal@pwc.com

Tjen She Siung
tjen.she.siung@pwc.com

Ay Tjhing Phan
ay.tjhing.phan@pwc.com

Nicholas Sugito
nicholas.sugito@pwc.com

Turino Suyatman
turino.suyatman@pwc.com

Brian Arnold
brian.arnold@pwc.com

Nikolas Handradjid
nikolas.handradjid@pwc.com

William Christopher
william.christopher@pwc.com

Dexter Pagayonan
dexter.pagayonan@pwc.com

Novie Mulyono
novie.mulyono@pwc.com

Yessy Anggraini
yessy.anggraini@pwc.com

Enna Budiman
enna.budiman@pwc.com

Oki Octabiyanto
oki.octabiyanto@pwc.com

Yuliana Kurniadjaja
yuliana.kurniadjaja@pwc.com

Esa Perdana
esa.perdana@pwc.com

Omar Abdulkadir
omar.abdulkadir@pwc.com

Yunita Wahadaniah
yunita.wahadaniah@pwc.com

Gadis Nurhidayah
gadis.nurhidayah@pwc.com

Otto Sumaryoto
otto.sumaryoto@pwc.com

Gerardus Mahendra
gerardus.mahendra@pwc.com

Peter Hohtoulas
peter.hohtoulas@pwc.com

www.pwc.com/id



PwC Indonesia



@PwC_Indonesia

If you would like to be removed from this mailing list, please reply and write UNSUBSCRIBE in the subject line, or send an email to id_contactus@pwc.com.

DISCLAIMER: This cont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

© 2024 PT Prima Wahana Caraka.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Indonesian member firm, and may sometimes refer to the PwC network. Each member firm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

